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박상웅 · 조은희 · 김대식
이양수 · 이종욱 · 김상훈
강대식 · 신동욱 · 최보운
김도읍 · 고동진 · 이현승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, 우주·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, 기술이전·사업화,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,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

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제4호·제5호,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).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5.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
2.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
3. 원자력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

4.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

5.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원자력이용정책의 기본방향,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
2.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인식·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 확산
3.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급
4. 그 밖에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의 수립·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·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추진과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9조(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5.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</u>
<u>4. · 5.</u> (생략)	<u>6. · 7.</u>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
	<u>1.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</u>

<신 설>

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실증
과 시범사업

2.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기술
이전·사업화 지원

3. 원자력연구개발성과를 활용
한 제품·서비스의 보급 및
공공수요 창출

4.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해외
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

5.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성과
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
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에게
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
수 있다.

제16조의2(원자력이용정책에 관
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) ① 과
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
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
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
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원자력이용정책의 기본방향,

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
관한 정보 제공

2.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인식
· 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
확산

3.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홍보
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급

4. 그 밖에 원자력이용정책에
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원자력이용정책의 수립·추진
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
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
인·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
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
절차를 거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
·추진과 제2항에 따른 의견수
렴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